

- 강릉대
- 경상대
- 공주교육대
- 군산대
- 금오공대
- 목포대
- 부경대
- 부산대
- 순천대
- 안동대
- 여수대
- 전남대
- 제주대
- 창원대
- 충남대
- 한국교원대
- 한국기술교육대
- 항공대

● 1. 강릉대학교폭력및성희롱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정 2000. 9. 15. (제495호)
개정 2001. 8. 25. (제534호)
개정 2001.10. 25. (제605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릉대학교 구성원과 관계된 모든 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 ②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둉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③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강릉대학교 구성원이라 함은 강릉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시간강사 포함), 사무직원(임시·일용직원 포함), 조교, 연구원, 학생(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자 및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

-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 할 권리가 있다.
-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폭력 및 성희롱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 ③ 폭력 또는 성희롱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된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④ 폭력 또는 성희롱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 또는 그 대리인의 동의없이 그 신원이 노출된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

(폭력·성희롱 대책위원회) 폭력 및 성희롱의 상담과 신고접수에 관한 업무는 학생지원과에서 담당하고, 홍보 및 처리에 관한 업무는 별도로 실치한 폭력 및 성희롱 대책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6조:

(구성) 폭력 및 성희롱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교원위원 7명, 직원위원 4명과 학생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교원위원 중 교무처장, 학생처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원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며, 직원위원은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남1인 여2인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고 학생위원은 남1인, 여1인으로 구성한다. 사안에 따라 학생위원은 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제직위원을 11인으

로 간주한다).

- 위원회는 학생처장이 되고, 교직원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학생지원과 업무) 폭력 및 성희롱과 관련된 학생지원과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상담
- 폭력 및 성희롱의 신고 접수
- 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처리 요청

제8조:

(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
 - 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조사 및 처리
 - 폭력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 기타 폭력 및 성희롱과 관련된 중요사항
- ②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 결과를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신고)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학생지원과에 한다.

②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학생지원과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 없이 이를 학생지원과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와 상담) ① 위원장은 사건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생지원과로부터 신고가 보고되면 위원장은 자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개시는 신고가 접수된 최초의 시간으로 한다.

⑤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30일 이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문 제출 등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위원회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 폭력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씩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처리를 요청 받았을 때
- 회의는 제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3조

(경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14조

(직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직원(겸임 가능)을 둔다.

제15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00.9.15.)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8.25.)

제1조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25.)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민족 경상대학교 성폭력 규제학칙(학생요구안)

②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이 규정은 경상대학교 구성원간에 일어나는 모든 성폭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여 올바른 성문화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 특별법과 형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뜻한다.

제 3조(적용범위)이 규정은 경상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수 교직원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①교수는 정교수와 시간강사 족탁직까지 모두 포함한다. 학생은 본교 재직생 및 휴학생을 교직원은 일용직까지 모든 근무자를 포함한다. 또한 외인교수와 교환학생도 포함한다.

②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해자와 피해자중 일방이 위 ①의 적용이 명백할 경우에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③본 조항의 적용시 기준시기느 stkrjs 발생시이며 이후 쌍방의 지위 변화는 그 적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제 4조 (피해자의 보호)

①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징계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 5조(학교의 의무)학교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그 외 제반활동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 2장 성폭력 상담처 처리기관

제 1절 성폭력 상담실

제 6조 (설치)학교는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성폭력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설치 운영한다.

제 7조 (업무)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성폭력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②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신적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병원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안내하는 일

③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성폭력 사건을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위임으로 받아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일

④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는 일

⑤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⑥성폭력 사건이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및 가해자 체육프로그램을 담당운영하는 일

제8조(구성)상담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담실장과 상근 상담원 1인 이상을 둔다

①상담실장과 상담원 지역사회 협력단체가 추천하는 성폭력 상담 전문가중에서 임명되며 총여학생회의 주선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상담실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조교역간명을 둘 수 있다.

제 3장 조사위원회

제 9조(설치)성폭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1.성폭력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성폭력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사항

3.기타 중요사항

제 10조(구성)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상담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에서 위원자이 호선하며 위원은 본교 교수 또는 교직원 3인, 학생대표 3인으로 위원장이 추천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1조 (회의)생략

제 12조(상담)

①상담실은 피해자또는 대리인의 상담이나 신고를 받으며 중재등 성실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②상담실은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지원 당사자와의 중재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상담실장은 상담을 통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1.피해자의 피해가 성폭력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2.반윤리적, 반도덕적이라고 판단될 때

제 13조(결정 및 처리)

①위원회는 제 12조에서 회부된 사건을 심의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피해자에게 민 형사법적 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조치

2.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 본 앤에 의한 징계요구등 필요한 조치

3.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 봉사, 배상등의 징계

4.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②위원회는 사건이 처리 결과를 학교당국에 보고하고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4장 징계

제 14조 (교원의 징계)교원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교원 징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해임 직위해제 감봉 견책등의 징계를 한다.

제 15조(직원의 징계)직원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경상대학 직원징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해임 직위 해제 정직감봉 견책등의 징계를 한다.

제 16조 (학생의 징계)학생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학칙에 따라 제적 무기징학 유기징학 근신등의 징계를 한다.

제 17조 (동조하는 자에 대한 징계)성폭력 행위에 가해자에 동조한 자에 의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등이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하였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징계를 한다.

제 18조 (징계의 소집)학교는 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9조(징계결과의 공고)위원회는 사건이 처리된 후 일주일 이내에 조사결과와 징계요구안을 학교는 징계결과를 일주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 5장 보직생략

3. 공주교육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1. 12. 13.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교육대학교 내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절차, 담당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육과 균로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성별괴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의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성적, 학위, 진학기회, 고용, 인사, 취업기회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제3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기타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
- ②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제 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주교육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주교육대학교 교직원(외부강사, 기타 임시직 포함)과 학생(교환학생 포함)이 피해자 또는 피신고자로 관련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제 4조(관련당사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당사자의 동의 없이 관련당사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및 기타 관련당사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재발 인식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를 요청할 권리 및 필요 이상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피해자나 대리인이 피해사실에 관해 고충을 제기하거나 고소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아니 된다.

제 5조(성희롱 및 성폭력상담소) ① 성희롱 및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학생생활연구소에 둔다.

② 상담소는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을 담당하며,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장 직속의 성문제특별위원회에 사건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담소 소장은 학생생활연구소장이 겸보한다.

제 6조(성문제특별위원회) ① 상담소에서 의뢰된 사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중재 및 기타 조치(징계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하여 성문제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상담소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조(신고와 신고인)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 3자가 상담소에 한다.

②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상담소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8조(정례) ① 위원장은 성문제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정계의 양성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 사과, 다양한 형태의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및 성문제 관련 단체에 서의 일정기간 봉사활동 등 상담소 내규에 따라 가해자의 반성을 촉구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신고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정계할 수 있다.

제 9조(경비) 상담소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세칙은 소장과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X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 군산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1. 5. 3 훈령 제643호
개정 2001. 9. 1 규정 제711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7/5/2001

이 규정은 군산대학교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성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 범죄행위의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실제 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이나 요구,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정신적·물리적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성차에 기반한 위협적·적대적·공격적인 환경 또는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3. 제1호 내지 제2호에 불응·반박함을 이유로 학업평가·고용 및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 3 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군산대학교 교·직원(시간강사 포함) 및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 적용한다.

제 2 장 성폭력피해 상담 및 처리기관

제 1절 성폭력피해 상담실

제 4 조 (설치)

성폭력에 관련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상담소에 성폭력 피해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를 둔다.

제 5 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상담에 관한 사항
- ② 성폭력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 ③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④ 성윤리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의 처리 요청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수정하기?

제 6 조 (설정)

- ① 상담실에 실장을 두되, 상담실장은 학생생활상담소의 소장으로 한다. X
- ② 실장은 상담소의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2 절 성윤리위원회 X

제 7 조 (설치)

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총장 소속하여 성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8 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여성위원을 3인 이상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본교 교·직원, 관계전문가 및 학생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고, 학생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참여한다. ?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상단실의 교·직원으로 한다.

제 9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폭력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성폭력사건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

사용어정제자료는 거나?
상단실과 연관되는 것과?

여기? (어떻게 서둘..)

제 10 조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상단실에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요청 또는 보고를 받았을 때
4. 회의는 제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성폭력사건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6.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3 장 성폭력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 11 조 (신고 등)

① 상단실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받으면 친절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② 상단실은 상단을 통하여 심리적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상단실장은 상단을 통하여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칠회하거나, 상단 실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2 조 (조사·보고)

① 위원장은 상단실에서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에 심사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설정 및 처리)

① 위원회는 제11조 제3항에 의해 회부된 사건을 심의·의결하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피해자에 민·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2.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배상 등의 지도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4 조 (수당등 경비)

위원회와 상단실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15 조 (비밀의 준수)

성폭력 사건의 업무처리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나 된다.

제 16 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단실장과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01. 5. 3 훈령 제643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9. 1 규정 제711호)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사행정 안에 구성

5. 금오공과대학교성희롱및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정 2001. 4. 6. 규정 제322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금오공과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 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③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학교설치령과 금오공과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자 및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 적용된다.

제4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 및 성폭력을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

③ 성희롱 및 성폭력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④ 성희롱 및 성폭력을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조사·처리와 이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법적 처리를 담당하는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교원 4인 조교 1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과장이 되며, 위원중 교무연구과장, 학생과장, 총무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기타 위원은 학생과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의 1/4 이상을 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안에 따라 학생위원은 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제재위원회를 8인으로 간주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성희롱 또는 성희롱 사건의 처리를 요청 받았을 때

- ③ 회의는 제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2.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
3.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
4.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5. 기타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사항

②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 결과를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고는 누가 알 수 있는지 X.

제9조 (학생생활연구소 업무)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학생생활연구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상담
2.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신고 접수
3.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 요청

제10조 (신고 등)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학생생활연구소에 한다.

②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학생생활연구소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처리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와 상담) ① 위원장은 사건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생활연구소로부터 신고가 보고되면 지체없이 위원회에서 그 사실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개시는 신고가 접수된 최초의 시각으로 한다.

⑤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징계)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범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는 반성문 제출 등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위원회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3조 (경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예시는 다른 예시는 어디서 어떤게...

제14조 (직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직원(겸임 가능)을 둘 수 있다. — 자녀는 두는 게 맞는 나가...

제15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제정 2001.4.6 규정 제322호)

이 규정은 200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6.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는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찾지 못했구요...)

교수회 및 위원회 등에 대한 규정 중에 있군요)

제 7 월 성차별개선위원회

제91조 (성차별개선위원회) 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성희롱과 성폭력을 방지하고, 대학 내 성차별 금지 및 개선을 위하여 성차별개선위원회를 둔다.

② 성차별개선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어떻게

7. 부경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1. 4. 16 규정 제210호

개정 2001. 12. 31 규정 제272호

개정 2001. 4. 10 규정 제292호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 조에 따라 부경대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성적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 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특정성별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 및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및 가해자 일방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의 준수)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성희롱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 2장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관

제1절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실

제5조 (설치) ①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을 위하여 학생상담센터 내에 성희롱 및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상담실 내에는 성희롱 및 성폭력 담당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타 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성 실태 조사 및 연구

4. 성 윤리위원회에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 요청

제7조 (구성) ① 상담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장과 약간명의 상담교수를 둔다. 상담실장은 학생상담센터 소장으로 하고 상담실의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상담교수는 본교의 전임강사 이 상의 교원으로서 상담실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상담실에는 전문상담원 및 행정조교 1인을 둘 수 있으며, 전문상담원은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상담실장이 위촉 한다.

X 꼭 두고...

제2절 성 윤리위원회

제8조 (기능)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총장 소속 하에 성 윤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담실 내규의 제정 및 개폐

2. 상담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본교 교수 또는 관계전문가 및 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총 여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회기 ..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씩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상담실로부터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
4. 회의는 제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성희롱 및 성폭력사건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회의결과는..

제 3장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

제11조 (신고)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상담실에 신고한다.

②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상담실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없이 이를 상담 실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 (상담) ① 상담실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받으면 친절히 상담에 응하고 심리적 지원을 한다.

② 상담실장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나 신고를 받으면 상담교수를 지정하여 성실히 상담에 응하도록 하고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상담실장은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상당 하거나 반윤리적, 부도덕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사·보고) 위원장은 상담실에서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위원에 심사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의결 및 처리) ① 위원회는 공정하고 사실에 입각한 조사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심의를 하며, 필요한 경우 사건 당사자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화

② 심의시 가해자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해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 (가해자에 대한 처벌) ① 위원회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전에 대하여는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를 한다. 징계 구체화

② 위원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직접 주의지도 조치 및 반성문 제출

2. 가해자의 실명 공개 사과

3. 사회봉사활동 및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③ 가해자나 위원회의 징계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피해자나 증인 및 신고인에게 사후보복을 가할 경우에는 가중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법의할 수 있다.

④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를 방조한 자, 또는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위증하는 동조자에게도 제2항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4장 보직

제16조 (위원회의 세칙·기회·회피)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때, 또는 특정위원에 대한 피해자의 기회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체 없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 등 경비) 위원회와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예산편성은?

제18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담실장과 위원장이 소관 업무별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2.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4.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대 학사행정 안에 구성

제 2편 학사행정, 제 4장 학생행정

8. 부산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98. 9. 12 규칙 제 973호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의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성문화 확립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란 성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제 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수(시간강사 포함)와 직원 및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사건에 적용한다.

제 2장 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관

제 1절 성폭력 상담실

제 4조 (설치)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연구소에 성폭력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둈다.

제 5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성실태 조사 및 연구
4. 성윤리위원회에 성폭력사건 처리 요청 및 보고

연구소장이 다른 부서로 옮겨간다...

제 6조 (설장) ① 상담실에 실장을 두되, 상담실장은 학생생활연구소의 소장으로 보한다. 직접설장인...

② 실장은 상담실의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2절 성 윤리위원회

제 7조 (설치) 성 폭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총장 소속하여 성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폭력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 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본교 교수 또는 관계전문가 및 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총여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소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학생생활연구소의 성폭력 상담조교로 한다.

제 9조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성기회의는 매학기 1회씩 연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성폭력 상담실에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

④ 회의는 제적위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성폭력사건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⑥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 3장 성폭력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 10조 (상담) ① 상담실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받으면 친절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상담실은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상담실장은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피해가 성폭력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2. 반윤리적·부도덕적이라고 판단될 때

제 11조 (조사·보고) ① 위원장은 상담실에서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에 심사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조 (결정 및 처리) ① 위원회는 제11조 2항에서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법률적지원 조치

2.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봉사·배상 등의 지도

지경이 어디서가능한가지...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4장 보침

제 13조 (수당등·경비) 위원회와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수당등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 14조 (비밀의 준수) 성폭력 사건의 처리업무에 관여한 자는 직무과정에서 알게 되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5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담실장과 위원장이 소관업무별로 따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의 학생생활연구소의 "성폭력상담실"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학사행정 관련한 규정 안에 구성되어 있음

9. 순천대학교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1. 11.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차별 및 구체에 관한 법률을 제7조와 동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대학교 구성원과 관계된 모든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를 말한다.

②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과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5. 음란한 사진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행위, 팩스나 통신으로 음란그림을 보내는 행위

③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의 적용은 순천대학교 구성원으로 한다.

② 순천대학교 구성원이라 함은 순천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시간강사 포함), 사무직원(임시·일용직원 포함), 조교, 연구원, 학생(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자나 피해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의 의무)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폭력과 성희롱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성폭력 또는 성희롱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건의 조사나 처리 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해자나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성폭력·성희롱상담소) ① 순천대학교 총장은 성희롱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성폭력·성희롱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를 담당하는 순천대학교 성폭력·성희롱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장은 학생상담센터장이 되며, 부소장은 교수나 부교수 중에서 학생처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소장)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상담소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상담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掌한다.

제7조(상담소 업무) 성폭력과 성희롱에 관련된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과 성희롱에 관한 상담

2. 성폭력과 성희롱의 신고 접수

3.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의 처리 요청

제8조(위원회 구성) 성폭력과 성희롱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교원위원 7명, 직원위원 4명과 학생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교원위원 중 교무처장, 학생처장, 학생상담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원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며, 직원위원은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남성 1인, 여성 2인으로 하며 학생위원은 남 1인, 여 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학생위원은 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제직위원을 11인으로 간주한다).

2.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교직원 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직원(겸임 가능)을 둔다.

제9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2.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

3.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의 조사 및 처리

4. 성폭력과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5. 기타 성폭력과 성희롱에 관련된 중요사항

②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 결과를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신고)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나 제3자가 상담소에 한다.

②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상담소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 없이 이를 상담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와 상담) ① 위원장은 사건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상담소로부터 신고가 보고되면 위원장은 자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업무개시는 신고가 접수된 최초의 시간으로 한다.

⑤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30일 이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성과)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령과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문 제출 등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위원회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성폭력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범죄일 경우는 기증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매해기 1회씩 연 2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처리를 요청 받았을 때

④회의는 제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⑤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4조(경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15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01. 11. 8)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안동대학교 학칙은 기타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안동대 성희롱예방및처리를위한규정

성희롱 예방 및 처리

제 정 2001. 4. 19.(규정 제37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여 안동대학교 구성원이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학리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 또는 요구 및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성차에 기반한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환경 또는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다. 가로 또는 나무에 불용·반바탕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및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한자가 정신적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2.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3.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안동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교원(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신고인과 신고기구) ①당사자는 물론 당사자의 대리인이나, 사건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다.

②신고인은 서면, 전화, 통신, 직접방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상담실에 신고할 수 있다.

③기타 교수 대표기구, 직원 대표기구, 학생회 등에 접수 된 사건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최종적으로 신고사항 일체를 제5조의 성희롱상담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가수 문제, 저작권은 가수는?

ABD는 어느 시기까지?

제5조(성희롱상담실) ①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게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연구소에 성희롱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②상담실에는 상담실장과 상담직원을 두며, 실장은 학생생활연구소장이 겸임한다.

③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성희롱예방및처리위원회에 성희롱·폭력사건 처리요청 및 보고
3. 성희롱 예방을 위한 홍보
4. 기타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제6조(성희롱예방및처리위원회) 성희롱·폭력의 예방 및 사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예방및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교무처장, 사무국장 및 상담실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하고 교원, 직원, 학생위원에는 반드시 여성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의 경우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만 참석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⑤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희롱·폭력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희롱·폭력사건의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폭력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4. 기타 성희롱·폭력사건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제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결정 및 처리) ①위원회는 상담소에서 조사·보고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상 법적 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2.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요청

3.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이나 피해자가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성문 제출, 가해자의 사과 등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

②위원회는 사건의 처리 및 결정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이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동조자에 대한 처벌)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할 때는 그 동조자를 이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12조(처리기간) 이 규정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발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사건으로 하며, 신고 후 6개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건당사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사건처리의 전 과정에서 사건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한다.

②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주소, 성명, 응모, 소속 및 기타 당사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3번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신고, 조사,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반할 권리
2.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 또는 거부할 권리
3. 특정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④당사자의 대리인 및 사건상황을 신고한 사람도 제1항과 제2항에 준한 보호를 받는다.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여수대

(여수대도 학칙이 없구요... 학칙 중 성폭력 관련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학생 징계 관련 규정 중에 아래에 해당하면 유기징학을 내린다고 합니다.)

8. 교내외에서 남녀관계를 문란케 하거나 부녀자를 회통한 자

12. 전남대학교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정 2001. 9. 1. 제76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의 예방과 상담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라 함은 성별희생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용을 이유로 학습권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3. "당사자"라 함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지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이 대학교소속의 국가공무원

2. 이 대학교(각 대학원 포함)학칙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의 형태에 관계없이 교육·연수를 받는 모든 학생

3. 이 대학교의 기성회직원, 소비조합직원, 시간강사, 계약직교직원 및 기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이 대학교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

4. 이 대학교에 재화·시설·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

제4조(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위원회 설치) ①이 대학교에 성희롱·성폭력의 방지와 피해구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상담 및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성희롱·성폭력 피해여부의 결정·조정·처분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 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 피해자, 가해자 등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½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제적위원 ¾ 이상의 출석 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상담원의 구성) ①상담원은 관계전문 교수 및 직원 등 5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피해신고사건의 성격상 원만한 상담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상담원의 임무) ①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피해방지에 의료대응이나 전문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내외 기관이나 전문인에게 의뢰

②상담원은 상담내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사항 등 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상담원의 연수) 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상담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내의 성문화 등에 관한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상담원의 임기) 상담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조사소위원회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여성위원은 1인 이상으로 한다.

③조사소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④조사소위원장은 조사소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조사위원장으로부터 지명받은 조사소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조사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조사소위원회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⑥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담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교내 게시판이나 인터넷토론방 등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이 대학교의 자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능하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조사소위원회 임무) ①조사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사실관계 조사

2. 성희롱·성폭력관련 당사자 및 상담원 등으로부터의 사정취취

3. 그밖에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조사

②제1항제1호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신고접수일 또는 자체조사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의 종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조사기간 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조사 도중에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조사소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원회에 그 경과 및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사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조사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18조(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조사소위원회 위원의 자격제한) 성희롱·성폭력의 가해자로 제기를 당한 자와 동일한 학부(과), 부처에 소속한 위원은 조사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0조(상담 및 신고) ①성희롱·성폭력에 관하여 상담요청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나 대리인 명의로 위원회 또는 상담원에게 전화, 편지,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거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접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이용안내와 상담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학기초마다 학내 게시판 또는 홍보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상담 및 신고는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한다.

④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상담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요청) ①위원회는 조사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해자의 행위가 관계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동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허위신고) 위원회는 상담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사건내용이 허위로 명기되었을 경우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징계조치) ①총장은 제21조 제1항의 징계요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징계위원회로부터 제21조 제2항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통지) 총장은 징계처분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의 준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업무에 관여하는 위원은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직무과정에서 알게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26조(기증처벌) ①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가한 위해행위나 재범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②본인이나 타인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신고·상담하거나 조정·고충 제기를 한 자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제27조(위원회의 배척) 조사과정에서의 주의의무에 위반된 행위가 있을 경우와 피해자나 가해자로부터 특정위원회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해당위원회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등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위원회 위원장은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1. 9.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대학교 학칙은 일반행정 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13. 제주대학교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 정 2001. 4. 21 규칙 제482호

개 정 2001. 8. 31 규칙 제5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균형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상담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든 언행 및 행위로서, 그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말한다.

제3조(의무) 대학과 대학 구성원은 대학 내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선도에 힘써야 하며 성적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직용법)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시간강사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과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5조(피해자 등 보호) ①성희롱·성폭력 문제를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떤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성희롱·성폭력 문제를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④사건당사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성희롱·성폭력상담실) ①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균절을 위하여 제주대학교성희롱·성폭력상담실을 제주대학교상담·봉사센터에 둔다.

②상담실에는 간사를 두되, 성폭력 상담원 자격을 가진 교직원이 된다.

제7조(상담실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의 접수·상담·처리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 수립·시행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처리 요청 및 보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전문기관 연계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균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성희롱·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 ①상담실 운영의 기본방침과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대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직원 3인, 학생 3인 및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한다. 다만, 여성은 5인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성별이 다른 위원으로 대책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상담·봉사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학생위원 3인은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되어 학생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참여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대책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상담실의 간사가 겸임한다.

제9조(대책위원회의 업무) 대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사건의 처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본 규정 및 상담소 내규의 제정 및 개폐

상담소의 예산 및 결산 등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대책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위원장, 상담·봉사센터소장 또는 5인 이상 위원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간사는 대책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 작성 등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조사위원회) ①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조사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안에 따라 대책위원회 위원중에서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되며, 그 임기는 조사가 종결되는 때로 한다. 다만, 사건당사자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③조사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조사위원장이 그 대상이 된 때는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신고) ①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서면, 전화, 통신,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소에 신고한다.

②상담실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3조(상담과 조사) ①상담·봉사센터소장은 사건 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상담을 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신고가 접수되면 상담·봉사센터소장은 대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상담·봉사센터소장은 사건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사건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0 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의결 및 조치) ①대책위원회는 상담실에서 회부된 사건을 신속히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구제수단 및 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가해자에 대하여 관련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가해자에게 사과, 교육, 봉사, 배상 등의 권리 조치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상담·봉사센터소장은 대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5조(예산의 지원 등) 대학은 대책위원회와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부 칙(2001. 4. 21. 규칙 제48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31. 규칙 제523호)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행위

- 가.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나.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다. 얼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 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답패설
- 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다.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라.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허용하는 행위
- 마.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바.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 가. 외설적인 사건,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나. 직접 또는 백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 다.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스토킹에 의한 사례

-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이의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학사행정 안내 구성

14. 창원대학교성폭력·성희롱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정 1999.11. 4(규정 제450호)

개정 2001. 9. 1(규정 제61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원대학교 구성원간에 일어나는 모든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건의와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성 구별에 의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3.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 공직생활에서 성구별에 의한 부당한 차별행위
4.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5.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7조에 해당하는 행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수(시간강사 포함), 조교와 직원(임시직 포함) 및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관련된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적용한다.

제2장 성폭력·성희롱 상담 및 처리기관

제1절 성폭력상담실

제4조(설치)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지원과에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제5조(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성폭력 예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성폭력 실태 조사 및 연구

4. 운영위원회에 성폭력사건 처리 요청 및 보고

제6조(구성) ①상담실에는 실장과 상담원으로 구성한다.

②실장 1인, 상담원은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③실장은 상담실의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성폭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총장 소속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폭력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폭력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본부, 교수회, 직원회, 학생대표 각 3인 및 상담실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위원은 쳐·국장, 교수회의장·총학생회장·직원회회장이 추천하는 2인, 학생지원과 학생생활상담실장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특정한 소관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정한 안전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특정한 소관사항에 따라 별도 임명(위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성폭력상담실에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

4.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성폭력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6.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3장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10조(상담) ①상담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받으면 친절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②상담실은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상담실장은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피해가 성폭력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2. 반윤리적, 부도덕적이라고 판단될 때

제11조(조사, 보고) ①위원장은 상담실에서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결정 및 처리) ①위원회는 제11조 제2항에서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2.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봉사·배상 등의 지도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②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비밀의 준수) 성폭력 사건의 처리업무에 관여한 자는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5. 충남대학교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

2000. 2. 29

훈령 제1000호

개정 2001. 10.29 훈령 제104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구성원간의 성폭력을 근절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 언행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협요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1.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2. 상대의 신체에 음란한 접촉을 하는 행위
 3.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어떤 특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적인 요구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폐스나 컴퓨터 등으로 음란한 그림을 보내는 행위
- ②이 규정에서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가해자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2장 상담 및 처리기관

제4조(상담실 설치) ①학내 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취업및생활지원센터에 성폭력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②상담실에 상담실장과 상담직원을 두며, 상담실장은 입학취업과장이 겸임 한다.

③상담실장은 상담실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상담실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업무) 상담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위원회에 성폭력사건의 처리 요청 및 보고
3.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4. 학내 성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제6조(위원회) ①성폭력 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남대학교성폭력 예방및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본교교원, 직원, 학생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2인 이내로 하되, 충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담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정기회의는 매 학기 1학식 1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담소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성폭력 처리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예방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④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성폭력 상담실에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경우

⑤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성폭력사건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3장 처리 및 절차

제8조(신고 및 접수) ①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은 피해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서면, 전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다.

②각 단과대학 학장 및 학생자치기구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은 접수 즉시 상담 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조사 및 보고) ①상담실장은 신고가 접수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상담실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상담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결정 및 처리) ①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조사·보고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2.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사과 등의 지도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치

②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기타 처리 및 절차에 관해서 위원회의 의결로 상담소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사건당사자 보호) ①성폭력에 대한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담당자와 관련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를 파악 할 수 있게 하는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성폭력 사건 심의와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및 가해자는 규정에 정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사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는 상담실장에게 언제든지 조사 및 처리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상담실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2조(수당 등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생략

16. 한국교원대학교 성문제 예방과 대책에 관한 규정

제정 2001. 6. 14. (규정 제18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원대학교 내의 성문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성문제 대책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성문제"이라 함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든 언행을 뜻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중인 모든 교원(시간강사 포함)과 직원(일용직 포함) 및 학생(대학원생 포함)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직법한 절차로 문제를 제기한 성문제 사건에 적용한다.

②성문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 변화는 이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장 성문제 상담 및 대책위원회

제1절 성문제 상담실

제4조(설치) 성문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을 위하여 학생생활연구소 내에 성문제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5조(구성) 상담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장과 약간 명의 상담교수를 둔다.

1. 상담실장은 학생생활연구소 소장으로 하고, 상담교수는 본교의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으로서 상담실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상담실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조교(연구조교 포함)를 둘 수 있다.

제2절 성문제 대책위원회

한국교원대학교 성문제 예방과 대책에 관한 규정

제6조(설치 및 기능) 성문제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성문제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문제 예방과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문제 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성문제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함께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연구소장이 되며 학생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교원 2인, 여자교원 2인,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2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에는 전문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위원회에 1인의 간사를 두며 학생생활연구소의 상담 조교로 한다.

⑥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당해 성문제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본건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성문제 상담실에서 성문제 사건의 처리를 요청한 때

③회의는 제적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간사는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제3장 성문제 사건의 처리

제9조(신고) ①성문제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학생생활연구소 성문제 상담실이나 위원회의 위원 중 누구에게나 신고할 수 있다.

②신고된 성문제 사건은 자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 ①성문제 사건의 조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상담전문가를 통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상담전문가가 조사 보고한 사건을 심의하여 그 처리 방법을 의결한다.

③전항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상담실장은 자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자에게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2.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 대한 사과, 교육, 봉사, 배상등의 권고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4장 보 칙

제11조(예산의 지원 등) 대학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12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또는 성문제 사건의 처리에 관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일반 행정 중 기타 행정 안에 구성

1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 : 2001. 8.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 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요건과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모독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1. 성을 매개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행동과 요구 및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성차에 기반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3.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 공직생활에 있어서의 성차에 따른 부당한 차별행위
4.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학교에 제직종인 교수(시간강사, 임시교원 포함), 조교(임시조교 포함), 학생, 직원(임시직원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가해자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2장 상담 및 처리기관

제4조(성폭력상담실) ①학내 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연구소에 성폭력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②상담실에 상담실장과 상담직원을 두며, 상담실장은 학생생활연구소장이 상담 직원은 상담원이 겸임한다.

③상담실장은 상담실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상담실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상담

2.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성폭력사건의 처리 요청 및 보고

3.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4. 학내 성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제5조(위원회) ①성폭력 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교무처장·행정지원처장·상담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교수 3인 이내, 직원 3인 이내, 학생 3인 이내의 신임직위원으로 구성되며, 여성위원은 각각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학생관련 사안에만 참석한다.

④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 교직원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담소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성폭력 처리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예방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④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상담실장으로부터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경우

⑤회의는 제직위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성폭력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처리 및 절차

제7조(신고 및 접수) ①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은 피해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실에 신고한다.

②각 지도교수 및 학생자치기구, 노동조합 및 교직원 협의단체 등에 접수된 성 폭력 사건은 상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조사 및 보고) ①상담실장은 신고가 접수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상담실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상담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결정 및 처리) ①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조사·보고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2.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대학내규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사과 등의 지도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치

②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개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기타 처리 및 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상담실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사건당사자 보호) ①성폭력에 대한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를 파악 할 수 있게 하는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성폭력 사건 심의와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및 가해자는 규정에 정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사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는 상담실장에게 언제든지 조사 및 처리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상담실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1조(수당 등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 8. 1부터 시행한다.

18. 한국항공대학교 성희롱 금지 및 예방 학칙

제17장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제70조 (성희롱 금지) 우리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은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정석학원 및 인사규정,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제71조 (성희롱 예방교육) 총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2조 (피해자 구조조치 등) 총장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성희롱 피해상황을 접수 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 금지

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제70조 제2항을

총여학생회내에서 조직적으로 토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는 분석은 빠른시일내에 토론을 거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현재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에 관한 학칙은 그 적용범위가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으로 협소하며, 성희롱에 대한 개념정의도 되어있지 않다.

또한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해서 그 규정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정석학원 및 인사규정,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에서 인사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본적 조차 없고 학생들이 자료를 보기도 힘든 상황이다.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도 역시 이 성희롱 예방 학칙 외에는 학칙 어느 부분에도 관련 규정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학칙과 규정으로 정계한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제72조 피해자 구조조치도 피해자 중심의 사고 이외엔 구체적인 방도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작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교당국이 2001년도 2학기에 쥐어새로 모르게 신설한 것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에서 나오지 못했다.